

보육정책추진방향

최성지 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장

1. 보육 현황

■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수

- 2005년 현재 보육시설 수는 28,367개소임. 이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1,473개소로 5.2%이고, 개인 보육시설은 45.0%, 가정 보육시설은 40.0%임.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수는 989,390명임. 국공립 보육시설은 111,911명 (11.3%)이 이용하고, 개인 보육시설은 55.9%, 가정 보육시설은 13.0%, 법인 보육시설은 12.7%가 이용함.

※ 보육시설 수와 이용 아동 수는 1990년 기준 1,919개소, 48,000명에서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이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표 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2005. 12.31)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단체 보육시설	개인 보육시설	부모협동가정보육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시설 수	28,367 (100.0)	1,473 (5.2)	1,495 (5.3)	979 (3.5)	12,769 (45.0)	42 (0.1)	11,346 (40.0)
이용 영유아수	989,390 (100.0)	111,911 (11.3)	125,820 (12.7)	56,374 (5.7)	552,360 (55.9)	933 (0.1)	129,007 (13.0)

자료: 여성가족부(2006), 보육통계.

■ 연도별 보육 예산

-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후 2년이 채 못 되는 짧은 기간동안 보육정책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짐.

-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하고, 보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음.

〈표 2〉 연도별 보육예산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3,273	4,355	6,551	8,752	13,355	17,286
국비	1,703	2,101	3,120	4,050	6,001	7,910
지방비	1,570	2,254	3,431	4,702	7,354	9,376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내부자료.

2. 보육정책 추진 방향

■ 보육료 지원 확대

- '06년 저소득층 만0~4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까지 확대함.
- 정부는 차등보육료와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07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임. 이 경우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70% 이상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됨.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은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보육시설 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수급계획에 따라 확충할 계획임. 이는 보육 서비스의 이용 기회를 다양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 '10년까지 국공립시설을 두 배로 확충하는 것이 목표임.

■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 활성화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은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형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정부는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

재 0세아 249천원, 1세아 104천원, 2세아 69천원씩 지원하고 있음.

- 장애아 전담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확대('05년 월 15만원 → '06년 월 20만원) 및 장애아 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함('05년 200명 → '06년 600명).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야간에 운영하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05년 2천명 → '06년 3천명).

■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종사자 배치 강화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 설치가 기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뀌었으며,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됨.
- 설치기준과 관련해서는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 보육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시설면적을 영유아 1인당 3.63㎡에서 4.29㎡로 확대함.
- 보육실은 1층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2층 이상 설치된 보육시설은 금년 말까지 비상대피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함.
- 또한 개별 아동에 대한 보살핌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등 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함.

■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 보육교사 등급은 종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2005년 4월부터 국가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아울러 시설장에 대해서도 국가자격증제를 '06년 12월에 도입하여 자격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보육교사가 매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을 2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리고, 승급에 필요한 교육은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림.

※ 보수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비용을 전액 지원함.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환경 개선, 우수한 보육인력의 유치와 함께 보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보호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표준보육과정을 개

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의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05년 도입되었고, 평가인증사무국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 보육시설 평가 인증 대상 시설을 1천 개소('05년)에서 올해에는 4,000개소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을 한 후 '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확대할 예정임.
- ※ 평가인증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